구매업무처리 규정

1983. 10. 6. 제정 2023. 11.15.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에서 소요되는 물품, 공사 및 용역의 구매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물품이라 함은 모든 기계기구, 집기비품, 소모품, 시설자재, 영선자재, 인쇄물, 실험실습재료 등을 말한다.
 - ② 공사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를 말한다.
 - ③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, 설계, 조사, 측량, 시설관리, 전산개발, 유지보수, 인쇄물 제작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에 따른 구매는 구매팀에서 담당한다. 다만,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(자산품목 제외) 및 500만원 이하의 용역과 2천만원 이하의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. <개정 2016.9.23.>
 - 1. 도서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류(도서, 신문, 잡지, CD, 앨범제작, 비디오테이프, 제본 등) <개정 2019.1.10.>
 - 2. 박물관, 자연사박물관에서 구입하는 박물류
 - 3. 음식 및 숙박업소의 선정 및 대금
 - 4. 교통수단 관련 업체 선정 및 대금
 - 5. 경품, 상품권 및 기부자를 위한 기념품 구입
 - 6. 예수금(학생회비, 교직원회비 등 자치회비)에 의한 구매
 - 7. 박물관, 출판문화원, 패션디자인연구소, 도예연구소에서 소요되는 원자재의 구입
 - 8. 출판문화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 및 상품의 제작 혹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<개정 2018.6.20.>
 - 9. 대학건강센터에서 구입하는 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
 - 10. 각종 인건비(설문조사, 강사료 등)
 - 11. 유류, 가스 및 식당에서 구입하는 식료품
 - 12. 각종 렌탈 및 유지보수 요금(1개월 이내의 물품 및 장소 대여 혹은 단가 10만원 이하의 렌탈료 및 유지보수료) <개정 2019.8.22.>
 - 13. 교육 및 연구목적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료 및 TV, 케이블 방송 수신료
 - 14. 본교 기관 및 교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하는 물품(자산품목 제외) <개정 2023.11.15.>
 - 14의2. 본교 기관에 위탁하는 용역 <개정 2022.1.20.>
 - 15. 고사리수련관, 가평수목원에서 구입하는 물품(자산품목 제외)
 - 16. 보안이 필요한 입시 관련 인쇄물(답안지,문제지 등)

- 17. 국외 기업에 위탁하는 용역
- 18. 각종 기계장비(실험실습용 기자재, 네트워크, 항온항습기, 보안관련 기계장비 등)의 긴급 수리(부품교체 포함)
- 19.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 교외연구비
- 20. 광고 관련 업체 선정 및 대금 <신설 2019.1.10.>
- 21. 기타 관리처장이 정하는 경우 <개정 2018.6.20., 2019.1.10.>
- 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제1항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으로 제5조제3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신청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. <신설 2016.9.23.>

제4조(구매신청) 구매신청은 물품, 공사, 용역 등 각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.

- 제5조(입찰방법의 구분) ① 구매신청부서에서 의뢰하는 1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경쟁입찰(일반경쟁입찰, 지명경쟁입찰을 말하며 이하 같다) 방법에 준하여 구매업무를 집행한다.
 - ② 1건당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에 준하여 품의서를 작성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공사 발주업무를 집행한다. <개정 2016.9.23., 2022.1.20.>
 - ③ 구매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한다. <개정 2022.1.20.>
 - 1. 동일 구조물 또는 설비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장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전차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
 - 2.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 시 공자와 계약을 할 때
 - 3. 마감공사에 있어서 전차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
 - 4. 물품을 제조·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
 - 5.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 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 경우
 - 6. 천재지변, 비상재해 및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지가 없을 때 <개정 2018.6.20.>
 - 7. 삭제 <2016.9.23.>
 - 8. 삭제 <2016.9.23.>
 - 9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 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<신설 2016.9.23., 개정 2018.6.20., 2022.1.20.>
 - ④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지정인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수의계약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7.8.16., 2022.1.20.>
 - ⑤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는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를 통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. <신설 2017.8.16.>
 - ⑥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서를 받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.

- ⑦ 계약의 목적,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매업무담당자는 입찰참가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때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관리처장이 신청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8.6.20., 개정 2019.1.10.>
- 제6조(예정가격조서의 작성과 비치) 구매업무담당자는 입찰 전에 결정된 예정가격을 봉서로 개찰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- 1. 총장 또는 관리처장은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20.>
 - 2. 총장과 관리처장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20.>
 - 3. 제5조제3항제5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7조(예정가격의 결정기준) 물품구입의 예정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.
 - 1.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
 - 2.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
 - 3. 정부 고시가격이 공시된 물품은 정부 고시가격
 - 4. 공사·시설보수·제작 등은 설계서에 계산된 산출기초 자료
 - 5.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
- 제8조(입찰보증금)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 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현금으로 갈음한다.
 - 1. 학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
 - 2.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
 - 3. 은행의 지급보증서
 - ② 본교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고 성실한 업체로 인정이 될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 - ③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.
 - ④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. <개 정 2016.9.23., 2018.6.20.>
- 제9조(낙찰자의 결정) ① 구매업무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(견적서)를 접수한 후 입찰 서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유효입찰 여부를 확인한다.
 - ② 예정가격 이하의 적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. 다만,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70%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한다.
 - ③ 삭제 <2018.6.20.>
 - ④ 매각 등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.
 - ⑤ 입찰자의 적격 여부는 입찰자가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(견적서)에 신청부서에서 요구하

구매업무처리 규정

- 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. <신설 2019.8.22., 개정 2022.11.17.>
- ⑥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적격심사기준」별표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, 이 경우 낙찰하한율은 제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1.17.>
- 제10조(계약서의 작성) ① 계약금액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용역과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10조의2(단가계약) ①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, 수리, 가공, 매매, 공급,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② 단가계약 업체 선정방법은 제5조에 의한다. 이 경우, 구매금액 기준은 연간 추정금액으로 한다. <신설 2019.1.10.>
 - ③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(자산품목 제외)의 구매 대금지급은 제3조제1항의 금액 제한과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서 자체 처리한다. <신설 2019.1.10.>

[본조신설 2018. 6. 20.]

- 제11조(계약보증금)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및 제8조 제1항 각 호의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.
 -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한다.
 - ③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.
- 제12조(납품 및 검수) ① 구매업무담당자는 물품 구매에 대한 결재완료 또는 계약체결시 그 내용을 총무팀에 통보하여 검수자가 물품검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20.>
 - 1. 물품의 납품은 계약체결시(발주시) 명시된 품명, 규격, 수량, 설계도면, 시방서, 견본 및 견적서와 부합되어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물품이어야 한다.
 - 2. 물품의 납품은 총무팀의 검수를 받은 후 물품청구부서가 물품인수를 받으면 완료한다. <개정 2018.6.20.>
 - ② 구매업무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시 그 내용을 신청부서에 통보하여 공사감독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20.>
 - ③ 구매업무담당자는 용역에 대한 결재완료 또는 계약체결시 그 내용을 신청부서에 통보하여 용역감독 및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지체상금) ①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4조제 1항에 따른다. <개정 2018.6.20., 2020.9.11.>
 - ③ 지체상금의 한도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4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. <신

설 2020.9.11.>

- 제14조(하자보수보증금) ① 물품, 공사 및 용역 등 의무를 이행한 후 일정기간의 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, 공사 및 용역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부서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.
- 제15조(대금의 지급) ① 물품, 공사 또는 용역의 대금은 제12조에 따른 검수자의 검사 후 지급한다.
 - 1. 구입한 물품의 대금은 신청부서 혹은 총무팀의 검수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18.6.20.>
 - 2. 공사 및 보수공사에 대한 대가 지급은 신청부서의 준공검사조서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18.6.20.>
 - 3.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은 신청부서의 용역 완료 확인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용역의 완료 이전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산출내역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등 국가계약 관련 법규, 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를 수 있다. <개정 2016.9.23., 2020.9.11.>

부칙

이 내규는 198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198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이 내규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199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199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4. 21. 전문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9. 23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8. 1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. 1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8. 22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9. 11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1. 17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1. 15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